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

(정승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84
------------	------

발의연월일 : 2011년 10월 31일
발 의 자 : 정승현·박은경·김철진·김영철·
성준모·김정택·이민근·전준호·윤미라·
박영근·김동규·함영미·정진교의원

1. 주 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1999년 개정이후 현재까지 12년간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간이과세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1999년 말 이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¹⁾를 살펴보면, 1999년 82.991에서 2011년 9월기준 122.6으로 47% 이상 상승함으로써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7%나 인하되었다고 볼 수 있음.

1)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 이에 따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더구나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과 소득의 투명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물가상승과 거래 및 소득 투명성 제고를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중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당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 : 덧붙임

부가가치세법(간이과세 기준액 인상) 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999년 이후 12년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동결되어 간이과세의 기준액을 8,000만원으로 인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상인들의 세무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와 장부기장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로 매출액의 1.5 ~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물간인상, 소득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고려하면, 간이과세 기준액의 상향 조정은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기준액에 묶여 있던 12년동안 물가는 47% 상승하였다.

1999년도 82.991이었던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1년 9월 122.6으로 47% 인상되었고, 대형마트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대상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간이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0년 38.1%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 없이 물가인상 만으로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의 77.7%가 노출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도입되면서 거래의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1999년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 275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43조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된 금액은 478조원으로 전체 민간소비지출액 615조원의 77.7%에 이르고 있다.

결국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만으로도 매출의 최소 77.7%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간이과세 제도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에서는 물가인상, 소득 및 거래 투명성의 제고 등을 고려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 11. .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